

행위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성명	
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

신청내용	자연공원의 명칭						
	행위의 종류						
	행위장소 및 면적						
	행위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 ()일간
	점용(사용)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 ()일간
	원상복구방법						

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이
의
의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위치도 1부 2. 토지사용승낙서(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. 지적도 및 임야도	

처리절차

[처리기관]

- 국립공원: 기후에너지환경부
- 도립공원: 시·도
- 군립공원: 시·군·구

※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.

